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제/개정 이력

[illegible]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선언문

임직원 여러분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중요합니다.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위에서 함께 성장하자는 것입니다. 당사 역시 대기업인 포스코, 포스코패밀리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타고 대기업과 견줄 수 있는 교섭력 및 경쟁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이에 당사는 2024년 ESG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이 핵심요소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법 준수를 통해 당사 및 관련업계에 공정한 거래문화 및 거래질서가 될 수 있도록 CP 문화 정착 및 확산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은 당사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행위가 위반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의 거래관계를 보호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만일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다액의 과징금이나 형사벌은 물론이고 기업 이미지 실추, 임직원의 제재 등 당사에 대한 유형 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모든 임직원들은 이 편람을 숙독하여 각자의 일상업무를 살펴보고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고, CP관련 교육을 철저히 이수하고 CP문화가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4년 01월 08일

대표이사 박 흥 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개념

CP(Compliance Program)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경제주체인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의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합니다.

CP는 경쟁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준법의식을 기업의 문화로 체계화함으로써, 법 위반행위 여부를 초기에 발견하고 이를 자진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동일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합니다.

CP(Compliance Program)의 8대 요소

01.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0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0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04.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활용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편람은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0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 판매부서 등 공정거래관련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0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0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게 대하여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 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합니다.

0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 한다.

목 차

1. 공정거래법

① 부당한 공동행위 -----	5
② 부당한 지원행위 -----	10
③ 일반 불공정행위 -----	19
④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 -----	23
↳임직원 행동 지침 -----	28

2. 하도급법

① 하도급 관련 규제 -----	30
② 하도급법 주요 내용 -----	36
↳임직원 행동 지침 -----	67

3. 상생협력법

① 납품대금연동제 -----	70
↳임직원 행동 지침 -----	76

4.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① 공정거래법 -----	78
② 하도급법 -----	81
③ 상생협력법 -----	84

CHAPTER. 1

공정거래법

- 01. 부당한 지원행위
- 02.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 03. 부당한 공동행위
- 04.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01. 부당한 지원행위

[1] 부당한 지원행위

사업자 간, 특히 계열회사 간의 지원행위는 한계기업의 퇴출을 막거나 경쟁기업의 압박을 통하여 경제력 집중의 유지 및 확장수단이 되고 있으며, 또한 피 지원기업이 위치한 개별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도 침해하게 되므로 공정거래 법에 위반됨

■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9)

- ①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자금(가지금금, 대여금 등), 자산(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상품·용역, 인력 등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②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 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통행세)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 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해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 부당한 지원행위의 판단기준

부당한 지원행위는 지원행위 여부와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위법성을 판단

■ 지원행위 여부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 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 보다 높거나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과다 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

→ 정상가격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지원 행위 유형별 정상 가격 산출 방법】

▶ ‘자금’ 지원 행위에서의 정상 가격(개별 정상 금리) 산출 방법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자금(가지금·대여금 등) 거래와 거래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지원 객체와 특수 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 ①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 객체와 특수 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 ②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를 순차 적용

▶ 자산·상품·용역’ 지원 행위의 정상 가격 산출 방법

• 해당 자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 재산권 등)·상품·용역거래와

- ①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
- ②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 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 ③ 만일 유사 사례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을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 -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일감 몰아주기)

•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가 지원객체에 과도하게 귀속되는 경우

•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유지가 가능하여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 경우

※ 예외사유 :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으로 거래 목적달성에 불가피한 경우

■ 지원행위의 예시

1. 가지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거래한 경우

• 회계처리 상 계정과목을 가지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원주체가 지원 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 지원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 준 경우
-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금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지원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태만히 하는 경우
- 임대료를 약정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경우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가지금 또는 대여금 기타 자금의 거래에 의한 지원행위는 실제 적용된 금리가 당해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간에 지원주체의 지원 없이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보다 낮은 경우에 성립함

• 다만,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자금거래에 의한 실제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와의 차이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의 7%미만으로서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2.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거래한 경우

•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 등을 저리로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또는 주식 고가매입]**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한 경우

[주식 고가매입]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 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한 경우

[주식 고가매입]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 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인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하여 증자 후의 지분율이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만, 증자 전 제1대 주주이거나 증자 후 제1대 주주가 되는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12 제외하며, 의결권이 제한되는 계열 금융사 등은 제1대 주주로 보지 아니함) [주식고가매입]
-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매수한 경우 [부동산 저가매도 또는 부동산 고가매수]
-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지원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지원객체에 무상 양도하여 지원객체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무체재산권 무상양도]

3. 부동산을 임대차 한 경우

- 지원객체에게 공장·매장·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 [부동산 저가 임대]
- 지원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 [부동산 고가 임차]

4. 상품·용역을 거래한 경우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한 경우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가 지원객체에 과도하게 귀속되는 경우
-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유지가 가능하여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 경우

5. 인력을 제공한 경우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한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6. 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한 경우

- 통상적인 직거래관행 및 기존의 거래형태와 달리, 지원객체를 통해 제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면서 실제거래에 있어 지원객체의 역할을 지원주체가 수행하거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역할이 중복되는 등 지원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경우

■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

-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 되는 경우, 지원주체의 계열사간 내부 시장을 활용한 지원 행위를 통해 경쟁 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한 지원 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면 부당성이 인정됨

- ① 지원객체가 지원행위로 거래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유지 또는 강화할 경우
- ② 지원객체가 속하는 거래분야에서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지원객체가 지원행위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④ 지원객체가 속하는 거래분야에서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 ⑤ 불공정한 방법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 회사나 사업부문에 대하여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채무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객체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지분비율에 따라 지원객체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사전에 공개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기업체(계열회사 제외)를 지원하는 경우
3.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5천만원 이하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해당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5.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건, 사회적 기업에게 각종 용역을 위탁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시설·설비를 무상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 하는 경우

02.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1] 부당한 거래거절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를 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한이 있으나 거래의 개시나 계속를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가 진다면 법에 위반됨

(가) 공동의 거래거절(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1.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공급거절,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 거래 계속의 거절 등이 포함됨
-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
-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 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음
- 공동의 거절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 위법성 판단기준

-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 공동의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있어 위법 하다고 판단함

■ 사업자들의 공동의 거래거절이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됨

- 재고부족,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부도 등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으로 인해 공동의 거래거절이 합리적이라고 인정 되는 경우
- 특정사업자가 공동의 거래거절을 당하더라도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 사전에 합리적인 거래자격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와의 거래 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 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와 '부당하게'의 구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와 '부당하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

- '정당한 이유 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 유형은 당연위법의 원칙이 적용되어 행위의 외형이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행위자에 있음
-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 유형은 합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행위의 유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불공정성과 효율성 증대효과·소비 자후생 증대효과 등을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성, 불공정성의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위법한 것으로 보며, 공정 거래위원회에서 부당성을 입증해야 함

(나) 그 밖의 거래거절(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1.나)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의 거래거절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사업자 단독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서 공동의 거래거절 대상 행위와 동일
-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 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음

■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거절 물품·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 다음과 같은 합리적 사유로 거래를 거절할 경우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생산 또는 재고물량 부족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신용결함, 명백한 귀책사유, 자신의 도산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거래거절 이외에 다른 대응방법으로 대처함이 곤란한 경우
- 당해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단독의 거래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차별적 취급

사업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나,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의 차별적 설정이 자기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됨

(가) 가격차별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2.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 가격차별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가격'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상대방이 실제 지불하는 모든 대가를 말하며, 할인율 등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이 포함됨, 거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의미)

■ 위법성 판단기준

- 행위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가격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가격차별 정도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상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에 미달하는지 여부 - 가격차별이 지속적인지 여부
-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전환 용이성 여부 등

■ 경쟁제한성을 가져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가격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되면 법 위 반으 로 보지 않음

-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상품의 부패성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차별 취급하는 경우
-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차별취급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나) 거래조건 차별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2.나)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조건(수량, 품질, 규격, 대금지급조건, 인도조건, 수송조건, 리베이트, A/S조건, 하자 책임기간 등)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 거래조건 차별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가격 이외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계약의 이행방법, 대금의 결제조건 등 거래내용면에서의 차별)

■ 위법성 판단기준

- 행위자가 거래조건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거래조건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거래조건차별 정도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거래조건차별이 지속적인지 여부
-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가 거래조건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전환 용이성 여부 등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2.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는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의 차별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계열회사에 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 대해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경쟁제한 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을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등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차별 취급하는 경우
-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차별취급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라) 집단적 차별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2.라)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경우

◎ 집단적 차별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차별 취급하는 행위(합의가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으며, 반드시 행위가 발생해야 함)

■ 위법성 판단기준

- 행위자가 집단적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집단적 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집단적 차별 정도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집단적 차별이 지속적인지 여부

-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가 집단적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전환 용이성 여부 등

■ 다음은 합리적 사유로 차별적 취급이 성립되지 않음

- 운송비용, 판매비용, 고객관계의 지속기간, 거래량의 다과,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등의 차이에 따라 거래가격 및 거래조건 등 차별을 두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이 있더라도 비영리기관이나 자선단체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3]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 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됨

■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요건

- ① 계속적인 거래관계 존재
 - 계속적 거래를 위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 투자여부 검토
- ②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함
 -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 비중 검토

※ 상기 요건의 구체적인 수준이나 정도는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관계(예시)

본사와 협력업체 또는 대리점, 대형소매점과 입점업체,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 제조업체와 부품납품업체, 지역독점적 공공시설 관리업자와 시설임차사업자, 독점적공공사업자와 계약업체, 방송사와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 등 간 거래관계

(가) 구입강제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6.가)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구입강제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구입요청을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구입강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

-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구입강제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등

(나) 이익제공 강요(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6.나)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이익제공 강요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거래 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토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
- 판매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부담·인력 파견을 강요하고, 인건비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이익제공 강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등(당해 행위의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당해 이익제공의 내용과 성격,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 판매목표 강제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6.다)

자가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 제품 공급 중단 등을 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 판매목표의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등

→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점 계약의 해지나 판매수수료의 미지급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 제성이 인정되나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되는 경우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음. 다만,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불이익 제공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6.라)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불이익 제공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포함)
- 거래상대방에게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계약 기간 중 부당한 거래 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 해지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을 설정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 여부 설정, 변경된 거래조건과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등

→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 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 판단

(마) 경영간섭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6.마)

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생산량, 거래 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경영간섭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 판매처의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자금 출납 등 사업 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 경영간섭이 부당한지 여부 등

→ 경영간섭의 의도 및 목적,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경영간섭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 판단

[4]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구매·유통 경로의 독점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곤란하게 한다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후생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법에 위반됨

(가) 배타조건부 거래 (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7.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경쟁사업자가 대체적 물품 구입처 또는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당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 받는지 여부
-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순위(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위반 가능성이 높음)
- 배타조건부 거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수 및 시장점유율(상대 사업자의 숫자가 많고 그 시장점유율이 높을 경우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음)
- 배타조건부 거래의 실시기간(장기인 경우 경쟁에 영향 미칠 수 있음)
- 배타조건부 거래의 의도 및 목적
- 배타조건부 거래가 거래지역 제한 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타 경쟁제한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가 다음과 같은 합리성이 있을 경우 법 위반이 아님

-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기술성, 전문성 등으로 인해 A/S활동 등에 있어 배타조건부 거래가 필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배타조건부 거래로 인해 타 브랜드와의 서비스 경쟁촉진 등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등
- 배타조건부 거래로 인해 유통업체의 무임승차 방지, 판매 및 조달비용의 절감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등

(나)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7.나)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 하는 행위

◎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을 구속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정도(지역제한을 하여도 제재가 없는 등 구속성이 엄격하지 않은 지역 제한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
 - 당해 상품 또는 용역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 여부
-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와 시장점유율
- 지역제한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타 불공정행위와 병행하여 행해지거나 재판매 가격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 당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서비스 질 제고 및 가격인하 유인이 축소되는지 여부 등

03. 부당한 공동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 (법 제40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Cartel, 담합)란 부당하게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를 말함

■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다음의 3가지 요소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어 법에 위반됨

• 둘 이상의 사업자

- 둘 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 합의의 존재

- 사업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는 계약·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함

⊙ 합의의 개념

- 부당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 간 의사 합의(합의만 있고 실행이 되지 않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
- 합의는 계약·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
→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도업체가 가격을 인상하고 후발업체가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의식적 병행 행위 일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정황 증거(정보교환, 만남의 증거 등)가 있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됨

• 경쟁제한성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간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사업자가 가격, 수량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야 함

■ 유의사항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위법이 됨
- 과당 경쟁방지, 경영압박에 대한 업계의 자구책, 정부 고시가격 준수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합리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
- 원재료·상품을 구입하는 제조
- 유통업자의 구매 시의 공동행위도 문제가 됨
- 공동으로 공급자의 가격인상 요구를 거부하기로 하는 것
- 특정 공급자로부터만 구매하기로 하는 것
- 공급자에 대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강요하기 위해 공동구매하기로 하는 것
- 부당한 공동행위는 일시에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성립함

■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상품(용역 포함)의 거래조건이나 대금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 상품(용역 포함)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설비의 신·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제한하는 행위
- 상품(용역 포함)의 생산·거래 시 상품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는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가격, 생산량 등 정보를 교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법 제40조 제5항)

부당한 공동행위는 명시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고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이런 점을 감안하여 법은 추정제도를 두어 아래 (가), (나)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추정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간접적인 사실만 있는 경우 직접적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일단 정하여 그에 따라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A)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등 관련 정황에 비추어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B) 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가)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등 관련 정황에 비추어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 성립요건 :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황증거 + 외형상 일치

(1) 정황증거

◎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황증거로 인정되는 사항

- 직·간접적인 의사연락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예) 해당 사업자 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 공동으로 행해져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행해졌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예)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예)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 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회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 변동폭이 동일한 경우

-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예) 제품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별 사업자들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또는 판례에서 인정된 정황증거

- 합의사실을 나타내는 회사 내부문건(단, 합의사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실제 행위와도 일치한다면 합의에 대한 직접적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음)
- 실무자, 임원모임 또는 협의체 등에서 가격인상 등을 논의한 사실
- 가격인상 정보 또는 영업방식을 사전 교환한 사실
- 원가나 비용구조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사시기에 동일한 가격수준, 같은 인상률로 인상한 사실
- 시장구조, 과거 법 위반 전력 등
- 모임을 나타내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2) 외형상 일치

◎ 외형상 일치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요소

- 가격 등의 변동률, 변동시점
 -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변동시점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구매대체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
 -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들간 구매 대체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
-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
 -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이 다소 느슨한 형태의 합의(가격을 특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합의가 아닌, 가격을 인상 하자는 등의 방향만 공동으로 결정하는 합의)라면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외형 상 일치 인정 가능

◎ 외형상 일치 인정 가능 사례

- 경쟁사별 상품 가격의 인상폭이 원단위까지 동일한 경우
- 품질이 대체로 동일하고 상호대체성이 큰 시멘트를 제조하는 7개 사업자들이 3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가격 인상률이 대체로 14%에 근접하나 회사별로 최대 1.4%의 차이가 있었던 경우

(나) 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은 때

■ 성립요건 : 외형상 일치 +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

(1) 외형상 일치

※ 상기 (가)항의, (2)외형상 일치 요건과 내용 동일

(2)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

◎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여부 판단기준

- 정보의 종류 및 성격
 - 가격, 생산량 등 교환되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교환된 경우 인정 가능성 높음
- 정보가 교환된 시점
 - 사업자의 의사결정 시점에 임박해 정보가 교환된 경우 인정 가능성 높음
- 외형상 일치의 내용과 교환된 정보의 내용 간의 관계
 - 교환된 정보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가격 등 경쟁변수에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인정 가능성 높음

◎ 필요한 정보의 교환 인정 가능 사례

- 가격, 생산량, 원가, 판매·재고·출고량, 거래조건, 지급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로서 미래정보, 비공개 정보, 개별 사업자별 경쟁변수가 특정되는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에만 배타적으로 교환된 경우
- 가격인상 결정 시점에 임박하여 인상일자, 인상계획 내역 등의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 가격인상계획 관련 정보가 상호 교환되었고, 각 회사들이 제시한 가격 인상안에 준하는 수준의 가격인상이 실제로 있었던 경우

※ 합의 추정의 복멸

- 공정거래법에 따라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합의 추정의 전제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추정을 복멸 할 수 있음

[3]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 (법 제40조 제2항)

공동행위 중 산업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통해 이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공동행위가 다음의 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은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법 제40조 제2항)

- ①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② 연구·기술개발, ③ 거래조건의 합리화, ④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04.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법 제2조 제3호)

(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의 판단기준

아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등의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할 수 있음

• 시장점유율

–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50% 이상,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75% 이상 사업자(단, 시장점유율 10% 미 만인 자 제외)

• 진입장벽의 존재 여부 및 정도

–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지며 신규 진입 가능성은 법적·제도적 진입장벽의 유무, 필요 최소한의 자금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 함

•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 당해 사업자에 비해 경쟁사업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지며 경쟁사업자의 규모를 판단할 때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생산능력, 원재료 구매비중 또는 공급비중, 자금력 등을 고려

•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가능성

– 사업자 간 가격·수량 기타의 거래조건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기 용이한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음

• 유사품 또는 인접시장의 존재

– 유사품 및 인접시장이 존재하여 당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짐

• 시장봉쇄력

– 당해 사업자의 원자재 구매비율이나 공급비율이 50% 이상(3개이하 사업자 75%)에 해당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짐

- 자금력

- 당해 사업자의 자금력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크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자금력의 판단에는 자본 또는 부채의 동원능력, 매출액, 이윤, 순이익률, 현금흐름, 자본시장에의 접근 가능성, 계열회사의 자금력 등을 고려함

- 기타 고려요인

- 거래선 변경 가능 여부,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 등

[2]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제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에 해당하는 각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함 (법 제6조)

-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단, 시장점유율 10%미만인자는 제외)

※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 사업자 제외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

(가) 가격남용 행위(법 제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9조 제1항)

-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 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 수준)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 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

◎ 가격남용 행위의 판단기준

- 가격

- 원칙적으로 현금결제에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거래관행상 다른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적용함

- 수급의 변동

- 당해 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급요인의 객관적 변동을 말하며, 이 경우 상당기간 동안 당해 품목의 수요 및 공급이 안정적이었는지 여부를 고려함

-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

- 가격결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재료비·노무비·제조경비·판매관리비·영업외 비용 등의 변동을 말함

- 동종 또는 유사 업종

-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분야를 위주로 판단하되, 당해 거래분야 위주의 판단이 불합리 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시장 또는 인접시장을 포함하여 고려함

- 통상적인 수준의 비용

- 각각의 비용항목과 전체 비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당해 사업자의 재무상황, 비용의 변동추세, 다른 사업자의 유사항목 비용지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현저한 상승 또는 근소한 하락

- 최근 당해 품목의 가격변동 및 수급상황, 당해 품목의 생산자 물가지수, 당해 사업자의 수출시장에서의 가격인상률, 당해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나) 출고조절 행위(법 제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9조 제2항)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 시키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 출고조절 행위의 판단기준

• 최근의 추세

- 상당기간 동안의 공급량을 제품별, 지역별, 거래처별, 계절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되, 제품의 유통기한, 수급의 변동요인,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요인을 감안

•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

- 당해 품목의 생산량이나 재고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 출하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함(단, 직영대리점이나 판매회사의 재고량 및 출하량을 합산)
 -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동 품목의 가격인상 유무
 -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 포함)의 동 품목에 대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의 증가 여부
 -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 포함)의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출하 여부
 - 원재료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자신은 동 원재료를 이용, 정상적으로 관련제품을 생산 하면서 타 사업자에게는 동 원재료의 공급을 감소시켰는지 여부

•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

- 주로 성수기에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기 전의 각 유통과정에서 품귀현상이 있음을 말함

(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법 제5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9조 제3항)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제한하는 행위
-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의 판단기준

• 간접적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자로 하여금 방해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

- 다른 사업자의 생산·재무·판매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업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

• 기타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량,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타당성이 없는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
-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대여자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행위
- 사업활동에 필요한 소정 절차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경쟁력을 침해하기 위한 특허권 침해소송 제기하는 행위

(라) 신규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 행위(법 제5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9조 제4항)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제한하는 행위
-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신규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 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 신규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 행위의 판단기준

• 기타 다음의 행위로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또는 기간설비에 접근하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진입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절하거나 감축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에 필요한 소정절차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
- 당해 상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의 수급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마)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및 소비자이익 저해 행위 (법 제5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9조 제5항)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의 판단기준

• 낮은 대가의 공급 또는 높은 대가의 구입

– 염가 또는 고가의 정도, 공급 또는 구입의 수량 및 기간, 품목의 특성 및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행위의 목적,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유무, 사업자 및 경쟁사업자의 시장지위 및 자금력을 종합적으로 고려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

• 기존 사업자의 면허권 등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여 경쟁사업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시설, 기술, 자본 및 원재료 등의 제공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공을 중단하거나 감축 하도록 요청 또는 강제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경쟁사업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의 주요 시장에 상당 기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집중 판매하는 경우

• 권장 소비자가격(가격에 대한 명칭에 관계없이)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과다하게 높거나 낮게 표시하는 경우

• 기타 소비자의 재산상·신체상·정신상의 제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공정거래법 임직원 행동지침

01. 부당한 지원행위

- 공정거래법상 ‘일반 부당지원 행위’ 금지 규정은 당사와 계열사간 거래뿐만 아니라, 당사와 비계열사간 거래에도 적용되는 규정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는 그러한 부당지원을 받은 회사, 부당지원을 한 회사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역할이 없는 회사(계열사, 비계열사 포함)를 거래 단계에 추가시키거나, 그 역할에 비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02.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 부당하게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계약조건(업체 귀책 시 계약금액 무조건 전액 환수 등)을 설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 업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그 내용, 품목, 가격, 요금 등에 관하여 당사의 지도를 받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업체의 당사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이유로 해당 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

03. 부당한 공동행위

-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경쟁사에 요구, 제공, 교환하지 않아야 한다.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관한 발주 수량, 비율 등을 경정하지 말아야 한다.
- 상대방 또는 모임, 교류회 등으로부터 담합 요청 또는 권유가 있을 경우 이를 명확하게 거절하고, 향후 해당 상대방 또는 모임 등의 접촉은 자제해야 합니다.

04.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 거래를 위한 가격, 물량, 납품기일, 대금 지급 방식 및 시기 등 중요 계약조건 설정시 거래 상대방과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어느 일방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게 거래조건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거래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 과정도 없이 계약기간 중간에 계약 해지, 물량 축소, 납품기일 변경 등의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거나 상품(용역)의 생산, 공급, 판매에 필수적인 요서의 사용,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CHAPTER. 2

하도급법

01. 하도급 관련 규제

02. 하도급법 주요 내용

01. 하도급 관련 규제

[1] 하도급법의 목적 및 입법 취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하도급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통해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거래상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

[2] 하도급법의 체계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적용대상

- 목 적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 적용업종 : 제조, 수리, 건설, 용역
- 적용대상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거래, 중견기업과 중견기업 간 거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 적용기간 :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나) 하도급거래의 규제내용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Do)

-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 건설하도급 입찰 결과의 공개(※ '21.12.9 법 개정안 국회의결,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
- 선급금 지급 의무
-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
-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의무

(※ '21.12.9 법 개정안 국회의결,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

-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 의무
-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의무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

◎ 원사업자의 금지사항(Don't)

- 부당특약 금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부당반품 금지

-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금지
-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청구의 금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유출행위 금지
-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금지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 보복조치의 금지
- 탈법행위 금지

◎ 발주자의 의무사항(Do)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의무

◎ 수급사업자의 의무·준수사항(Do)

- 서류보존 의무
- 계약이행보증(건설) 의무
- 신의칙 준수 및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 거부
- 신고시 증거서류 제출

(다) 법 위반에 대한 주요 제재내용

◎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시정명령, 권고 등)
- 공표명령
- 과징금 :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기술유통 행위는 최대 5억원까지 부과 가능)
- 상습 법 위반자 조치(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요청)

◎ 사법적 제재 (공정위의 전속고발)

- 하도급대금 2배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부당경영간섭 금지 및 탈법행위 금지 위반자
- 3억원 이하의 벌금
 - 보복조치

※ 양벌규정 : 행위자 및 법인 처벌

◆ 하도급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행위(3배 손해배상 책임)

1. 부당단가인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및 감액 금지)
2. 부당발주취소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3. 부당반품 금지
4.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3]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가) 하도급의 정의

◆ 민법상 하도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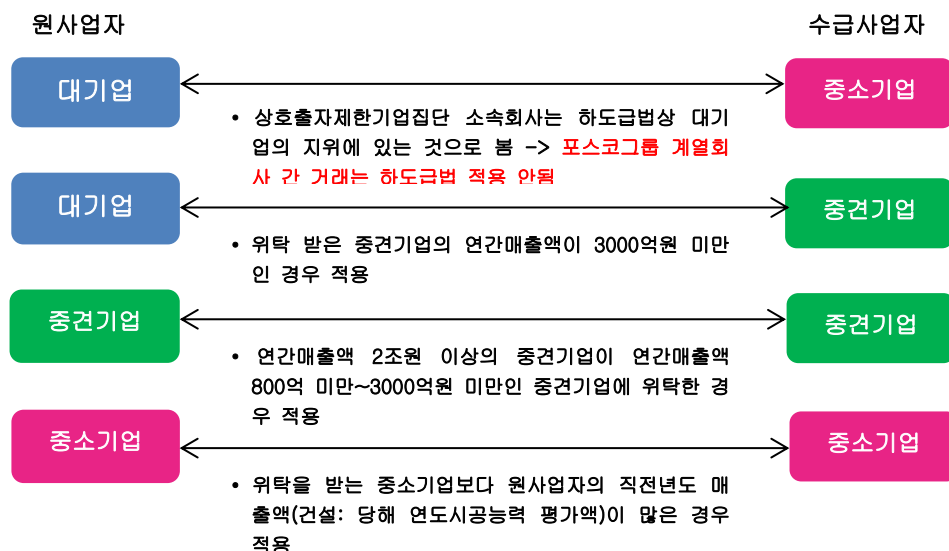
- 도급이란 당사자 일반(수급인)이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어느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거래형태이다. (민법 제 664조 참조)
- 하도급이란 도급계약에 따른 재도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다시 그 도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수급인(하수급인)에게 다시 도급하는 거래 형태를 의미함

◆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 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고 한다)를 받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하도급법 제2조 제 1항 참조)

(나) 법 적용 대상요건

◆ 적용대상 사업자 (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



※ 중소기업 정의

- 제조·서비스업종별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3개년 평균·연간매출액 4백억원 이하~1천5백억 원 이하
- 건설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3개년 평균·연간매출액 1천억원 이하

※ 중견기업 정의

↳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 공공기관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아닌 기업

※ 중견기업이 수급사업자로 보호되는 경우

- 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이하 ‘대기업’)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 우
- ②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 적용제외대상 중소기업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 연간매출액(시공능력 평가액)이 일정규모 미만 중소기업은 원사업자 대상에서 제외

위탁유형	연간매출액(시공능력평가액)
용역위탁	10억원 미만
제조·수리위탁	30억원 미만
건설위탁	45억원 미만

(다) 적용대상 거래

◎ 제조하도급 (‘제조위탁’: 하도급법 제2조 제6항)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業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 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① 물품의 제조 ② 물품의 판매 ③ 물품의 수리 ④ 건설

☞ 그 業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 고시

①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業으로 하는 경우

- 제조·수리·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OEM거래 포함). 단, 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는 제외함
-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 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 단, 대량생산 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함
- 물품의 제조를 위한 금형, 사형, 목형 등 -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 등
- 상기 물품의 제조·수리를 위한 도장, 도금, 주조, 단조, 조립, 염색, 봉제 등(임) 가공

☞ 위탁 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 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전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으로 간주

② 사업자가 건설을 業으로 하는 경우

-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가드레일, 표지판 등 시설물을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제작위탁
- 레미콘, 아스콘 등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행상 별도의 시방서등의 첨부 없이 규격, 품질 등을 지정하여 납품하도록 제조 위탁하는 것 - 주방가구,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제조위탁
- 규격·표준화된 자재라도 특별히 사양서 등을 첨부하여 제조 위탁하는 경우는 해당됨

◎ 수리하도급 ('수리위탁': 하도급법 제2조 제8항)

- 주문에 의해 물품을 수리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예시】 ①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②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③ 발전기수리업자가 발전기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건설하도급 ('건설위탁': 하도급법 제2조 제9항)

- 건설업자가 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①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그 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자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건설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③ 자체 발주공사의 건설위탁

- 건설업자가 아파트 신축공사 등 건설공사를 자기가 발주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 용역하도급 ('용역위탁':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

-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業에 따른 용역수행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이 경우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용역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함

①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 정보프로그램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나 전자계 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조합된 것
-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 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된 성과물
- 문자, 도형, 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 (디자인, 상표, 설계도면 등)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 및 연구 및 개발과 관련된 성과물

② 역무의 공급위탁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 (설계 제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 하는 활동
-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는 활동
-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 장소, 경비 등의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라) 법 적용대상 기간

◎ 관련규정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단,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조사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되거나 분쟁조정 당사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한 사건의 경우 3년이 경과 하여도 조사가 가능함 (하도급법 제23조)

※ 거래종료일

- 제조·수리 및 지식·정보성과물의 제작위탁 :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
- 건설위탁 : 공사가 완공된 날
-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 : 해지 또는 중지된 날

02. 하도급법 주요 내용

[1]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가)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 서면의 발급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중요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기 명날인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함

■ 중요 기재사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

- ①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목적물)의 내용
- ②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 ③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 ④ 하도급대금(선금, 기성금, 조정금액 등)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기일
- ⑥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물 등의 공급 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서면의 발급시기 : 사전 발급

-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수리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

■ 예외적으로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발급 가능 (하도급법 제3조 제3항)

-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 발급이 가능하나,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않은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서면에 적시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 정당한 사유를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함

↳ 해당사항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함(법 제3조 제4항)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 누락하여 기재하는 경우
- 제조·수리·건설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
- 전산으로 발주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 발주처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 다툼으로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미발급하는 경우(서면 미발급에 해당)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기본계약서(개별계약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주문서, 발주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하는 경우
-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VAN 또는 전산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수출용품을 제조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 (Offer Sheet)를 개별계약서로 갈음한 경우
- 서면 발급을 공정위가 제시하는 표준하도급 계약서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하도급계약추정제 (하도급법 제3조 제5항, 제6항)

- 원사업자가 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일정한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일정한 사항 : 원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작업내용, 하도급대금, 원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 통지와 회신은 내용증명우편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 제외)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함 · 인정하는 경우 : 계약의 성립을 서면으로 확인, 향후 분쟁에 대비 가능 · 부인하는 경우 : 계약의 불성립을 확인하고 작업중단, 하도급업체의 손해 예방 가능 · 회신이 없는 경우 : 계약 성립 추정, 추후 분쟁 발생시 소송 등을 통한 구제 가능

◎ 서류의 보존 (하도급법 제3조 제9항)

■ 보존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 ① 하도급계약서
- ② 제조 등의 위탁 목적물의 물품수령증명서
- ③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이 기록된 검사보고서
- ④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등이 기록된 서류(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
- ⑤ 선금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일과 지급금액이 기록된 서류
- ⑥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등이 기록된 서류
- ⑦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기록한 서류
- ⑧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기록한

서류

- ⑨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 서면
- ⑩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가 기록된 서류
- ⑪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가 기록된 서류
- ⑫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서류,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 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현장설명서 및 설계 설명서는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해당)

■ 보존기간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

※ 단,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류는 7년간 보존

■ 컴퓨터 등 전자매체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보존된 서류도 인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의 지불이 완료된 시점에서 하도급대금 지불 전의 관계서류(검수관계, 반품관계, 하도급대금의 결정 등)를 파기하는 경우
- 계약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원본을 파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서류의 양이 방대하여 보존이 어려워 마이크로필름, 컴퓨터디스켓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보존하는 경우

(나) 공공분야 발주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 '21.12.9 개정안 국회의결, 공포 1년 후 시행예정)

◎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결과 공개의무 부과(하도급법 제3조의5)

-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위탁 받은 사업자는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도급 계약의 입찰금액, 낙찰 결과 및 유찰사유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알려야 함

※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 등에 적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다) 선금금 지급 의무

◎ 선금금 지급이란?

- 발주자가 위탁하면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의 착수를 쉽게 하기 위해 원 재료를 구매하거나 노무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이러한 선금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도 이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 선금금의 지급 (하도급법 제6조)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때에는 그 선금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금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금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가 선금금을 법정 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선금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시 어음할인료 지급

◎ 적용기준

- 선금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선금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금금액 산정기준
 -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금금액에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다만, 발주자가 선금금의 사용내역(용도, 지급대상 품목)을 지정하여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역별로 다음과 같이 하도급율을 감산한 선금금을 산정 지급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용도와 각 항목별 비율을 지정 받아 선금금을 지급 받은 경우 : 그 용도와 항목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예) 토목건축공사에 토공사, 철콘공사, 조경공사가 있을 경우, 발주자가 선금금을 지급하면서 토공사 부문에 30%, 철콘공사 부문에 20%를 선금금으로 지정하여 지급하였다 면, 원사업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각각 하도급계약 금액의 30%, 20%를 선금금으로 지급하면 됨

↳ 용도를 지정 받지 않고 전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선금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 관련된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그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

(예) 발주자가 용도 지정 없이 계약금액의 10%를 선금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관련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각각 하도급계약금액의 10%를 선금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수급사업자가 선금금 지급보증서를 지연 제출하여 원사업자가 선금금의 법정지급 일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선금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데 소요된 기간(통보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은 지연이자 계산시 공제 할 수 있음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수령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미지급한 경우
- 선금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비율보다 적은 비율로 지급한 경우
- 선금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였으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경우
-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선금금을 지급하였으나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선급금을 공종별, 품목별로 용도를 지정하여 지급받았는데 하도급내용은 同公종이나 품목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
- 선급금 지급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증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라) 내국신용장(Local L/C)의 개설의무

◎ 내국신용장 개설 (법 제7조)

-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한 날(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 위탁하는 경우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해 주어야 함
-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물품수령증명서(인수증)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법 제 8조 제2항)

◎ 적용기준

-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원사업자 입증책임)
 - 수급사업자가 영세하거나 내국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작성능력이 없는 등의 이유로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 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등
 - 월 1회 이상 일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백히 합의한 상태에서 그 정한 날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등

[참작사유]

- 내국신용장 개설을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의 물품매도확약서가 필요하므로 수급사업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제조위탁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동안은 원사업자의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없음
- 수급사업자가 물품매도 확약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제출 받은 후 지체 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면 됨
- 원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아 법정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을 경우 원사업자는 원신용장이 개설되는 대로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면 됨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 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정당한 이유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지 못했으나 이를 분명히 입증해 준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15일 초과하여 물품매도 확약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준 경우

(마)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

◎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하도급법 제9조)

- 수급사업자가 납품·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객관적이며 공정·타당하여야 함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 다만, 용역 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인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적용기준

- 검사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로 제3의 공인기관 등에서 검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
-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라 함은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임
- 검사결과와 통지기간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는 인정되지 않음
 - ② 거대한 건설공사(댐·교량공사, 대단위 플랜트 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
- 검사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음

◎ 대량 납품하는 거래의 경우

- 제조업에서 대량 납품의 경우 샘플검사 또는 무검사 인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납품완료 후 제품에 하자 가 발생한 경우의 위험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단, 계약서에 반품에 관한 사항(반품사유, 시기, 보상 문제 등)이 명백히 밝혀져 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 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됨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원사업자가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검사할 경우
- 검사기준 및 방법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했으나 그것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공정·타당하지 않은 경우
-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목적물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 검사기준, 방법 및 시기를 정한 이후, 원사업자가 일방 적으로 변경하여 검사에 적용 하는 경우
- 검사기준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하지 않고,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

- 통상 적용되는 검사기준보다 매우 엄격하게 정해서 통상적으로는 합격판정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불량품의 발생을 예상하여 대금의 지급을 과다하게 유보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기성청구 또는 공사를 준공하고 준공통지를 원사업자에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날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원사업자가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면서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제조공정에서 나타난 불량을 수급사업자가 인정하여 적법하게 대금을 공제하기로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있어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제조업에서 대량 납품에 따른 샘플검사 또는 무검사 인수시 계약서에 반품 관련 사항을 명백히 밝히고 반품 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확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납품 후에도 반품 가능

(바)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지급비율 등 (하도급법 제13조)

-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 제1항)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목적물 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간주(법 제13 조 제2항)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 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 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의 진척에 따 라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해당 하는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 제3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 하면 안 됨(법 제13조 제4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 행일~만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면 안 됨(법 제13조 제5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 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여 야 함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을 지급 받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 제6항)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 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 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 제7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의한 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 제8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으로 지급할 때 적용 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함(법 제13조 제10항)

◎ 적용기준

■ 하도급대금 지급시기

-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상 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 중 먼저 도래한 기간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임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
- 하도급대금 지급시기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유예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시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수령일 기준 · 제조·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이며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날
-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
-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

■ 현금 결제비율 유지 적용기준

- 현금비율의 산정방법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 현금수령액/도급대금수령액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비율 : 현금지급액/하도급대금지급액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할 경우에는 당해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현금으로 인정되는 결제수단 : 현금, 수표

■ 어음만기일 유지 적용기준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결제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안 됨

☞ 타인 발행의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지급기간은 원사업자의 어음을 교부하는 날로부터 만기일까지로 간주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현금결제비율 및 어음만기일 유지 (법 제13조 제4항, 제5항)의 적용대상

- 1999년 4월 1일 이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적용

· 하도급계약 체결시점 판단기준

① 제조위탁의 경우 기본계약이 아니라 발주서 등에 의한 개별계약 체결시점

② 건설위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계약이 아니라 당초 하도급계약 체결시점 - 재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재하도급 관계에서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결제 받은 수급사업자(재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는 2차 하도급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결제비율 및 어음만기일 유지기준의 적용을 받음

- 선금금 지급에서도 현금결제비율 및 어음만기일 유지기준의 적용을 받음

■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계산방법

• 어음할인율은 시중은행의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급법 제13조 제9항)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 고시 어음할인율 : 연 7.5% (2015. 10. 23~) 어음할인료 = 어음지급액수 × 할인율 × 지연일수/365일

- 지연이자는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 「선금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 고시 지연이율 : 연 15.5% (2015. 7. 1~) 지연이자 = 지연지급 하도급대금 × 지연이율 × 지연일수/365일

■ 유의사항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목적물의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

•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수령일에 대한 입증자료를 명확히 해두기 위해서 목적물의 납품과 동시에 대금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까지 하도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 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어음할인료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처음부터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결제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월 1·2회 납품 받고도 마감제도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그 달 말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잡는 경우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의무

(※ '21.12.9 개정안 국회의결, 공포 1년 후 시행예정)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결제 조건 공시의무 부과(하도급법 제13조의3)

-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에 대하여 공시하여야 함

* ① 지급수단, ② 지급금액, ③ 지급기간, ④ 원사업자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 도급대금 분쟁조정 기구'에 관한 사항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는 상기 기준을 충족하므로 유의

(아)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 의무

◎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 (하도급법 제13조의2)

-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 제13조의 2 제1항)
-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함.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 제13조의2 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건설공사에 관하여 장기 계속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장기 계속 건설하도급계약을 통하여 건설 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최초의 장기 계속 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법 제13조의2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최초 장기계속건설하도급 계약시 약정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 하여야 함 (법 제13조의 2 제3항)
-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건설계약의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해당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연차별 장기계속건설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금을 반환하여야 함.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봄(법 제13조의 2 제4항)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 (채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다음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함 (법 제13조의2 제5항)

-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 ②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 ③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④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

• 보증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보증약관상 필요한 청구서류를 갖추어 보증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보증금액을 수급사업 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기관은 수급사업자 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법 제13조의2 제6항)

- ① 원사업자가 당좌거래 또는 금융거래 정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② 원사업자의 부도·파산·폐업 또는 회사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 급할 수 없는 경우
- ③ 원사업자의 해당 사업에 관한 면허·등록 등이 취소·말소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하 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⑤그 밖에 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 중에 건설 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 급보증이나, 1회계년도에 건설 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할 수 있음(법 제13조 의2 제7항)

• 원사업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 이행을 보증하지 않을 수 있음 (법 제13조의2 제9항)

•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음 (법 제13조의2 제10항)

◎ 적용기준

• 종전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승계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계 당시의 잔여공사에 대해 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함

•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정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 라 수급사업자에게 추 가로 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함. 단, 추가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예외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면제되지 않음

• 하도급대금 보증금액 범위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 - 선급금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 하고,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text{계약금액} - \text{선급금}) / \text{공사기간(월수)}] \times 4$ ·공사기간이 4개월 을 초과하고,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text{계약금액} - \text{선급금}) / \text{공사기간(월수)}] \times \text{기성금 지급주기(월수)} \times 2$

■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

-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하도급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 원사업자가 자신은 보증서를 교부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는 계약이행보증으로 현금을 예치토록 하거나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 의무를 면제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1건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의 보증 의무 면제를 악용하여 하도급공사를 세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하도급법상 탈법행위)
- 원사업자 자체발주공사에서 당사자들 간 합의로 지급보증을 면제하는 경우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대해 조건부로 합의한 상태
(예. 원사업자 부도 시)에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는 그 증가분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대금을 지급 보증한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同공사의 하도급대금에 대해 별 도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자)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법 제15조)

-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경우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관세 등을 환급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법 제15조 제1항)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관세 등 환급상당액의 지급은 수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한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법 제15조 제2항)
- 원사업자가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법 제15조 제3항)

◎ 적용기준

- 원사업자가 수출용 원자재 등과 관련하여 관세를 환급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함
- 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보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원사업자가 관세 환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함(지연이율 : 연 15.5%)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관세 등 환급액의 지연 지급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예시)
- 수급사업자가 기초원자재납세증명서 등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원사업자에 게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인도한 경우
- 기초원자재납세증명서 등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실거래와 상이하여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차)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하도급법 제16조)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받는 경우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 비용이 들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음(법 제16조 제1항)
-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 2항)
-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3항)
- 원사업자가 제1항의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 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법 제16조 제4항)

◎ 적용기준

■ 적용요건

- 제조·건설 위탁한 후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의 사유가 발생했어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받아야 함
- 수급사업자도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이어야 함

■ 조정기준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 지급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기 이전에 체결된 경우라도 원도급 대금을 조정 받은 원사업자가 조정 기준시점 이후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조정해 준 경우 적법함
-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 계약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 물가변동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추가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 주는데 있어서 물가변동 조정기 준 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 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조정기일

- 발주자로부터 조정(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조정해 주어야 함

■ 조정금액 지급시기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연 15.5%)를, 추가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함

(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하도급법 제16조의 2)

-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법 제16조의2 제1항)
-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음.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적용 안 됨 (법 제16조의 2 제2항)
-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함. 다만, 조합이 해당 기간 내에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4 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법 제16조의2 제3항)
- 조합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기 전이나 신청한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중앙회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법 제16조의2 제4항)
-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 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함 (법 제16조의2 제5항)
-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정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보며, 제3항 본문에 따라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이 제4항에 따른 조정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봄 (법 제16조의2 제6항)
-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정협의를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신청을 다시 할 수 없음(법 제16조의2 제7항)
-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 또는 중앙회는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6조의2 제8항)
- 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신청 및 조합의 협의 절차·방법,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의 신청 및 중앙회의 협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16조의2 제9항)
- 원사업자는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됨(법 제 16조의2 제10항)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 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조합 또는 중앙회는 중앙회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음
 -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 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 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적용기준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가능
-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약기간 경과 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 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급 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 대금 인하 비율 보다 낮은 경우에도 조정신청 가능
-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지 않았더라도 조정 신청 가능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추가금액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조정의무가 발생 함
- 공사 저가수주에 따른 단순 적자보전 사항은 조정신청 대상이 아님
 - ↳ 따라서 공급원가 변동에 아닌 다른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이에 응할 의무 는 없음
- 조합은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 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변동비율의 기준이 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기준일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에는 직전 조정한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함)로 함
 -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 10%
 -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 최근 3년간의 평균 최 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를 넘는 경우에는 7%로 함
 -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 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법정 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 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 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담당자를 통한 단가조정 관련 지시·보고 등 간접적 형태의 협의를 포함함)에 임하지 않은 경우
- 단가 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재고물량, 잔여 납품물량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 도하게 하도급대금의 조정 시점을 지연하여 제시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성실히 조정 협의에 임하였다면 그 결과 수급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님

■ 분쟁조정협의회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합의지연 시 영업활동이 심각히 곤란하게 되는 등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2]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하도급법 제4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할 수 없음(법 제4조 제1항)
 - 하도급 3배 배상제에 해당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경우 원사업자는 공정위 처분에 더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배상 책임 (→ 법 제35조 제2항)
- ↳ 배상액은 고의 여부, 수급사업자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취한 이득,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시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 될 수 있도록 벌점 5.1 점을 부과함으로써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예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②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④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⑤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⑥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¹⁾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²⁾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❶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①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❷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이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로 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전력비, 수도광열비 등)과 원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정경비(산재보험료, 공용보험료 등)는 제외

- ①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②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 적용기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및 객관적 요건을 갖춰야 함. 두 요건은 상호보완적으로 부당성이 큰 경우에는 가격기준을 낮추어서, 부당성이 적은 경우에는 가격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게 됨
- 주관적 요건 :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결정
 - 원사업자의 강요에 의한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결정
 - 원사업자가 기망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가격결정에 관한 판단을 방해하는 경우 등
- 객관적 요건 :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 ‘통상 지급되는 대가’란 당해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거래지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격
 - ‘낮은 가격’이란 시장 평균가격과의 괴리 정도, 원재료 등의 가격동향, 당해 하도급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취하게 되는 이익의 정도, 단가결정 방법의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자재(원부자재 포함)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토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하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同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고 건설 등을 위탁한 후 견적가격을 크게 하회하는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경쟁입찰 또는 부대입찰의 경우 당초 낙찰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 금액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원사업자의 도급 내역서상 직접공사비 수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가절감,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협력업체에게 단가 인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건설공사 발주의 경우 수의 계약시에는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의 합 미만으로, 경쟁입찰의 경우 업체의 투찰 이후 다시 대금인하 협상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감액금지 (하도급법 제11조)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음(법 제11 조 제1항)
- 당초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한 경우에는 적법함
- ☞ ‘감액의 정당성’ 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 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 부당감액의 경우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벌점 5.1점을 부과함으로 써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 하도급대금을 감액시 감액사유와 기준,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함(법 제11 조 제3 항 및 시행령 제7조의2)
- 공정위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표준서식 보급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하도급법 →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

◎ 적용기준

- 원사업자의 부당 감액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1조 제2항)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감액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해 합의한 경우, 당해 합의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 하여도 합의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 또는 지급기일 전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 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공제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납품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 하도급계약 후 추가 위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 하도급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고 원 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
- 계속적인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경우
-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감액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점 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하도 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목적물을 저가로 수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달리 감액하는 경우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수출용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당초 계약조건과 달리 원사업자가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
-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표준 안전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이 발주서대로 제조·시공되지 않았거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내역과 실제 시공한 공사내역에 차이가 있어 실제 시공내역 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대, 가불금, 장비임차료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최종 정산에 합의하여 감액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수출용 물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 결제통화를 외화 표시로 할 것을 합의하고 환율 변화에 따른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다)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하도급법 제8조)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안 됨(법 제8조 제1항)
-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이 있을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검사 완료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함(법 제8조 제2항)
- ‘수령’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것을 말함. 다만 이전이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때를 수령한 때로 간주(법 제8조 제3항)

◎ 적용기준

- 원사업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포함)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 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 회사로 합병 될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된 목적물의 제조 및 건설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기간 내 제조 및 건설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

■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무리한 납기를 설정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차후에 납기지연을 이유로 한 수령거부나 지체상금 공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바로 이의를 제기하여 서류상으로 수정토록 해야 하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시키거나 또는 발주서 등을 즉시 반납하여 책임을 면해야 함
-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물품의 내용이 발주서 위탁내용과 상이하다 하더라도 계약 서의 위탁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검사기준이 불명확하여 납품 받은 물품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가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령거부 할 수 없음

(라) 부당 반품의 금지

-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부당 반품의 금지 (하도급법 제10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시켜서는 아니 됨.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 용치 아니함(법 제10조 제1항)

◎ 적용기준

- 원사업자의 부당 반품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0조 제2항)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 하는 행위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 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 유로 반품하는 행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 가 제3자의 검사를 위하여 납 품하였음에도 불합격을 이유로 이를 반품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 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납품 받은 상품에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하자 등이 있어 목적물 수령 또는 인수한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반품 하는 경우
- 인수한 목적물이 주문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 인수일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 인수 또는 수령한 목적물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당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당해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반품 받아 자기가 당해 물품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여 수급사업자 가 스스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반품 하는 경우

(마)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하도급법 제 12조의3)

- 원사업자는 수급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단,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음(법 제12조3 제1항)
-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는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함(법 제12조의3 제2항)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는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 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 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함(법 제12조의3 제3항)
-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2조의3 제4항)
- ‘하도급계약 체결 전의 기술유행행위’도 이후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금지대상 포함
(※ '21.12.9 법 개정안 국회의결, 공포 6개월 후 시행예정)
- 기술유행의 경우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벌점 5.1점을 부과함으로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적용기준

■ ‘기술자료’(법 제2조 제15항) 비밀로 관리되는

- ①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②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의미
☞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 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예.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설계도면, 작업공정도 등)

◎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서면 기재 사항

- ①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 ②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 ③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 ④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⑤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 ⑥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공정위 기술자료 제공 요구 표준서식 보급

■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
-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

- 기술자료 미제공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로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

■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요구시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

- ①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②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 ③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 ④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 ⑤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 ⑥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배상
- ⑦ 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 ⑧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

< 거래이전 단계 >

-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 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신이 유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나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거래 개시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단순 열람한 후 이를 도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디자인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토록 하는 경우

< 거래 단계 >

-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정도,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기술지도, 품질관리 명목으로 물품의 제조공법을 수급사업자로부터 습득한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제조공법을 전수하여 납품 하도록 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자신과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 거래이후 단계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고 거래 종료 후 자신이 직접 생산 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 (법 제 35조 제2항)

↳ 배상액은 고의 여부, 수급사업자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취한 이득,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바)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법 제5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 적용기준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위탁목적물의 품질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주자, 바이어, 고객이 목적물 제조, 수리 시공시 특정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토록 요구한 경우
- 위의 경우에도 당연히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요구가 합리적이고 구속력 있는 요구이어야 함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공사현장에서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를 수급사업자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원사업자가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 장비를 구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계약 당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제조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가 지정한 부품이라고 주장하며, 원사업자가 고가의 부품 구매를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매처의 지정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발주자, 바이어, 고객이 목적물 제조 또는 시공 의뢰시 특정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위탁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을 위하여 특정 자재 및 장비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사)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및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법 제12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해서는 안 됨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법 제12조의2)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적용기준

- 수급사업자가 물품을 당해 하도급작업 이외의 다른 작업에 사용하거나 전매한 경우 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 결제청구 가능
- 수시로 기성이 발생하는 장기계약 거래에 있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한 경우, 실제 투입한 물량가액 이상으로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됨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 등을 원사업자로부터 사게 하고, 그 물품대금 등을 목적물을 납품하기도 전에 전액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 계속적인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원사업자가 납품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시 실제로 투입한 물량보다 더 차감하는 경우 (1회 기성금 지급시 전액 차감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함에 있어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사용 대가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한 것을 당해 하도급작업 이외의 작업에 사용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그 물품대금을 조기 결제하는 경우
- 원사업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급사업자가 전매한 경우 원사업자가 그 물품 대금을 조기 결제하는 경우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하도록 하고, 납품(기성)이 있을 때 마다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투입한 물량만큼을 납품대금(기성금)에서 차감 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한 원재료나 장비를 훼손하거나 또는 손실을 발생시켜 납품해야 할 목적물의 제도가 불가능하여 조기 결제하는 경우

(아)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법 제17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원사업자는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제시하여야 할 자료, 자료제시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당초 하도급계약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대물 변제한 경우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부득이 대물 변제한 경우

(자)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하도급법 제 18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됨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 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 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 **를 요구하는 행위
- * 정당한 사유
-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 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 사업자의 경영상 정보가 절차적·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 경영상의 정보

1.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 등)
2.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3. 수급사업자의 경영 전략 관련 정보 (제품 개발·생산·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4.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 (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납품조건 (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5.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 인사에 간섭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경우
-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 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 조건설정 등 재하 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 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 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배합 등을 실사하는 행위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3조의3에 근거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체결의 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에게 행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
 -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한 범위 안에서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요청 내지 권유하는 행위
 -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수급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지원하면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도 동일한 행위를 하도록 요청 또는 권유하는 행위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일정한 현금결제비율로 지급하는 행위
 - 인건비·복리후생비 지원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행위
 - 직업교육·채용박람회 실시 및 채용연계 등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행위
 - 상기 이외의 행위로서 효율성 증진·경영여건 개선·소속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차)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금지

◎ 보복조치의 금지 (법 제19조)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수급사업자에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협력업체 등록을 해제하거나 협력업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수급사업자에 대해 가격·품질·공 기 등에 있어서 다른 수급사업자에 비해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주기회 제한 또는 거래를 단절하는 경우

◎ 탈법행위의 금지 (법 제20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경우
-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는 경우

(가) 부당한 특약의 금지

◎ 부당한 특약의 금지 (하도급법 제3조의4)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

◎ 적용기준

- 원사업자의 부당 특약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조의4 제2항)
 - 원사업자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

◎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 유형(부당특약 고시)

1.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가. 수급사업자가 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제9항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아니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다. 수급사업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

2.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 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3.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가. 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규정에 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4.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가. 법 제9조의 제2항의 목적물 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나.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약정

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조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

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장비, 시설 등(이하 “자재 등”이라 한다)이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자재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마.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등의 인도지연, 수량부족, 성능미달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지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발주자의 의무사항

(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하도급법 제14조)

• 발주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법 제14조 제1항)

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 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③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 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④ 원사업자가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 (법 제14조 제2항)

•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14 조 제3항)

•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공제함(법 제14조 제4항)

•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법 제 14조 제5항)

•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14조 제6항)

• 재하 도급의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를 말함(법 제2조 제10항)

◎ 적용기준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9조)

•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요청 이 있어야 함(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외)

•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 합의는 반드시 3자 간에 동시에 명시적인 합의 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묵시적인, 순차적인 직접 지급 합의도 유효)

•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는 하도급 기성분의 총액이 2회의 기성분에 해당할 때임

•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기지급한 금액은 제외

•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발생 (의사표시의 도달 증명 책임은 수급사업자에게 있음)

-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시 민사집행법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공탁 가능
-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 부담

◆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 범위

• 직접 지급해야 할 금액의 확정

- 직접 지급금액의 확정이 직접 지급 의무의 전제이며, 직접 지급금액은 원사업자의 기성검사 및 발주자 또는 감리자 등의 승인(검수)에 의해 확정될 수 있을 것임
- 원사업자의 비 협조 등으로 확정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의 합의에 의할 수 있을 것임

• 발주자의 직접 지급 한도

-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 범위임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선금금 중 미 공제금이 남아있을 경우, 발주자는 직접 지급하기에 앞서 미공제 선금금을 상계하고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하도급법상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발주자가 명백히 직접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직접 지급액이 기성미확인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자가 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유보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임직원 행동지침

01. 하도급법

[필수사항]

- 공정위 표준계약서가 아닌 양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에 대해 반드시 하도급법 위반소지(부당특약 등)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가 납품한 물건, 용역 등의 수령 및 검수 요청을 거절, 반품하지 말고, 거절 등 에 대한 정당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문, 검수 미 통과 사유서 등으로 명확하게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계약기간이 명시 된 새로운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들과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거래규모, 경영상황, 작업의 난 이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
-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 수급사업자와 협의 한 문건은 보관하여야 한다.
- 연료비 상승이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 요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선금금 및 하도급대금은 하도급법상 규정에 맞게 지급하여야 합니다(15일·60일 이내, 현금비율 유지).
- 하도급법상 예외 사유(그 특성상 검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업무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 결과는 10 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탁취소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 발주취소사유가 사전에 서면의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 발주취소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투입된 비용이 있다면 정산하고,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문제사항]

- 당해 거래와 관련한 업무 연락을 하는 것 외에 부당하게 업체 경영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 부당하게 업체에 금전, 물품, 용역 등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 협력업체에 하도급 관련 서류 등을 3년 이내에 폐기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없는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 “경영상의 위기”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낮은 단가 설정을 요구한 경우, 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 적 으로 낮은 단가를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일정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 어떠한 명목으로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 정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속이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작업을 중단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작업 중단 전에 다른 수급사업자 에 게 작업을 대신하도록 하였고, 작업 중단에 대해 시정요구 및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일방적 으로 위탁을 취소하여서는 안됩니다.
- 수급사업자가 선행 작업의 납기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후행 작업의 위탁계약을 취소하였으나 원

사업자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사급 자재를 상당기간 지연하여 공급한 사실로 인해 납기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여서는 안됩니다.

- 검사 기준 및 방법이 불명확한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이를 반품하여서는 안됩니다.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당사가 공급한 자재 등의 품질불량 또는 공급 지연 등을 이유로 반품하여서는 안됩니다.
-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여서는 안됩니다.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면 안됩니다. - 구두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 안됩니다.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재료 가격, 납품단가 구성내역 원가 등이 포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면 안됩니다.
-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 안됩니다.
- 재계약시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수급사업자의 88 의사에 반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유도하면 안됩니다.
- 기술자료 요구시 기술자료 내역,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인도일 및 인도 방법 등을 서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면 안됩니다.
- 정당한 대가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 안됩니다.

CHAPTER. 3

상생협력법

01. 납품대금 연동제

01. 납품대금 연동제

[1]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상생협력법에 규정, 2023.10.04 시행 / 시행일 이후 체결, 갱신하여 수탁 및 위탁 거래부터 적용)

■ 납품대금 연동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기준(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 주요 원재료

수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① 천연재료

<천연재료의 예 - 금, 철,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류, 원목 등>

② 화합물

<화합물의 예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 비닐 등>

③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의 예 -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④ 수탁기업이 위탁 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중간재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중간재의 예 -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

■ 연동 대상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의미함. 다만, 해당 수탁·위탁거래에서 주요 원재료가 있다면 주요 원재료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야 함.

■ 위탁기업

위탁기업이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기업

- 외국법인도 무방하고, 수탁기업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많을 것을 요구하지 않음.
-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을 받은 위탁사업자들이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정한 경우 대표자가 아닌 위탁사업자 역시 위탁기업에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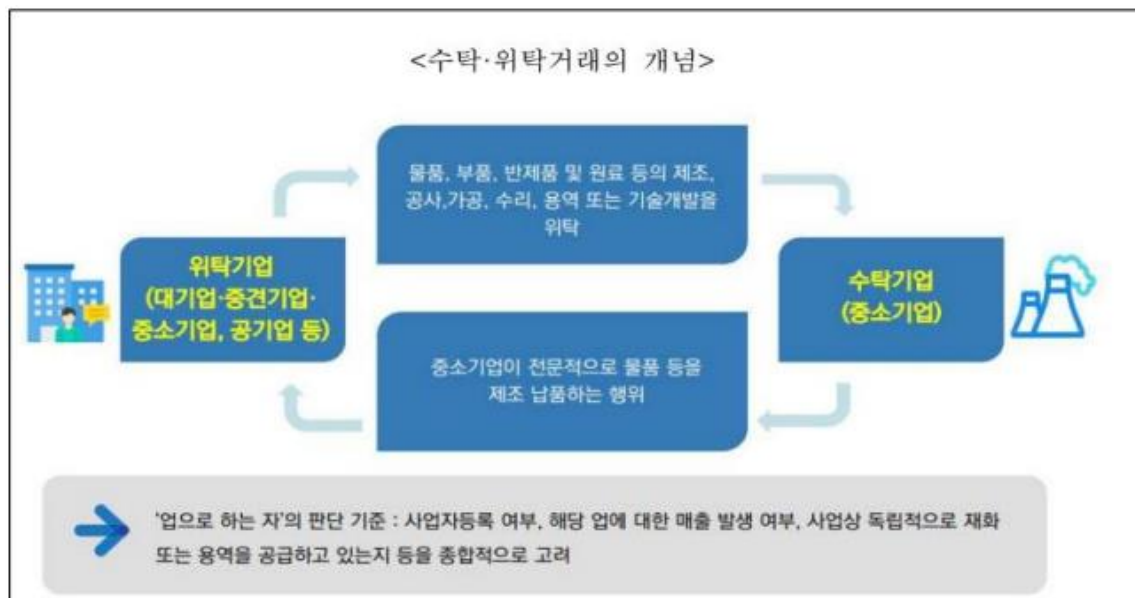
■ 수탁기업

수탁기업이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 받아 전문적으로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하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포함함.

[2]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 대상 : 수탁·위탁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본다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의 범위는 아래 예시를 포함한다.

구 분	범 위
제조업	제조업 중 가공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공사업	종합건설업 및 전문직별 공사업
가공업	제재 및 목재 가공업,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등
수리업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판매업	도매업 및 소매업
용역업	전기, 가스, 수도,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 “업(業)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경제 행위를 계속 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
-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여부, 해당 업에 대한 매출 발생 여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3] 납품대금 연동제 절차

①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계약을 체결할 때 연동 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 어떤 원재료를 대상으로 할지, 원재료의 가격 기준지표는 무엇으로 할지, 조정요건, 조정주기, 연동 산식은 어떻게 할지 등을 정하여 약정서에 기재
-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는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
- 수탁, 위탁거래 기본계약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별도의 특별약정서에 작성하는 것도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배포하는 표준약정서 사용을 권장

② 조정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약정에서 정한 조정일마다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해당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 ex) 조정요건이 5% 이상 또는 -5% 이하로 설정된 경우, 가격 기준지표가 10% 상승하였으면 조정요건을 충족하나, 3% 상승하였으면 미충족

③ 납품대금 조정

- 조정요건이 충족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약정서에 기재된 연동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
- ex) 연동 산식이 직전 납품단가 $\times$ (1 + 동 가격 기준지표 변동률)로 설정되었고, 직전 납품단가가 10,000원인데, 동 가격 기준지표가 10% 상승하였으면 11,000원($10,000 \times (1+0.1)$)으로 조정

④ 조정된 납품대금의 지급

-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기재된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 대금을 지급
-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전에 수탁, 위탁거래약정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수탁기업에 책임 있는 사유로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정대금 반영시점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작성 예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작성예시 1.>

○ 조정요건을 '모든 경우'로 설정하여 원재료 가격이 1원이라도 변동 시 조정하는 사례

구 분	기 재 사 항
1. 물품 등의 명칭	동 케이블(CC-001)
2. 주요 원재료	동
3.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전기동고시가)
4. 주요 원재료 기준 가격의 변동을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 조정일의 전전월(평균) 비교시점 : 조정일의 전월(평균)
5. 조정요건	모든 경우
6. 조정주기	1개월
7. 조정일	매월 1일
8. 조정대금 반영시점	매월 1일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조정될 납품단가 (단위 : 1개)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X 동 중량(2kg) + 5000원
10. 기타 사항	납품단가는 0.1원 미만 절사

※ 시뮬레이션

①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월 1일(조정일) 도래

(가정) 동 기준가격이 22년 12월(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1월(비교시점)

12,0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20%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납품 단가 : 12,000천원/ton x 2kg(=0.002ton) + 5,000원 = 24,000원 + 5,000원 = 29,000원

② 3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동 기준가격이 23년 1월(기준시점) 12,000천원/ton에서 23년 2월(비교시점)

13,0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8.3%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납품 단가 : 13,000천원/ton x 2kg(=0.002ton) + 5,000원 = 26,000원 + 5,000원 = 31,000원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작성예시 2.>

- 원재료의 기준가격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정하는 사례
-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 등 반영 비율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구 분	기 재 사 항
1. 물품 등의 명칭	동 케이블(CC-001)
2. 주요 원재료	동
3.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e-나라지표 주요 원자재가격동향, PP가격
4. 주요 원재료 기준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 (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 분기(평균) 비교시점 : 조정일의 전 분기(평균)
5. 조정요건	+3% 이상 또는 -3% 이하 변동 시
6. 조정주기	분기
7. 조정일	매 분기 첫 달 1일
8. 조정대금 반영시점	매 분기 첫 달 1일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조정될 납품단가 (단위 : 1개) = 직전 납품단가 + [(비교시점 동 기준가격 - 기준시점 동 기준가격) x 반영비율(100%) x 동 총량(1Tton)]
10. 기타 사항	납품단가는 0.1원 미만 절사

※ 시뮬레이션

①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분기 첫 달 1일인 4월 1일(조정일) 도래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20,000천원

동 기준가격은 '22년 4분기(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1분기(비교시점) 11,000천원/ton으로 상승
(변동률 10%로, 조정요건 충족)

★ 조정될 납품 단가 :

직전 납품단가 + (비교시점 동 기준가격 - 기준시점 동 기준가격) x 반영비율(100%) x 동 총량(1ton)
= 20,000천원 + [(11,000천원/ton - 10,000천원/ton) x 100% x 1ton] = 21,000천원

[4] 납품대금 연동제 제외 대상

-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수탁, 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2023년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사항

첫째. 모든 수위탁거래에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 부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또한, 위탁기업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둘째. 위탁기업의 탈법행위 금지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이 내려질 수 있다.

셋째. 위탁의 임의 취소·변경행위 금지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수탁기업의 책임질 사유 없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행 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는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넷째. 연동제 확산 지원의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정보 지원, 교육·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중소벤처기업부의 분쟁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분쟁조정 대상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각 지방청에 분쟁조정 등의 권한을 위임할 근거도 준비된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공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거래법 임직원 행동지침

01. 상생협력법

[필수사항]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기일, 검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받으면 물품 등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1.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및 범위 2. 비밀유지 의무 의 내용 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탁기업은 검사시설의 개선 및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 있는 검사기준을 정하여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 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위탁기업은 검사 결과 불합격한 물품 등에 대하여는 그 불합격 사유를 즉시 문서로 수탁기업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제사항]

-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 수탁기업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물품 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 납품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물품 등의 제조를 의뢰한 후 그 제조된 물품 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CHAPTER. 4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 01. 공정거래법
- 02. 하도급법
- 03. 상생협력법

01. 공정거래 체크 리스트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거래거절 (공정거래법 제 45조)	공급사에 대하여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쟁사와 공동으로 구입을 거절하였습니까?			
	특정거래처에 대한 구매물량을 상호협의도 없이 일시에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구매를 조건으로 제품매입을 요구하고 이에 순응하지 않는 거래처와의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거래처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비계열 회사를 배제하지는 않았습니까?			
차별적 취급 (공정거래법 제45조)	대량 구매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가격을 차별하지는 않았습니까?			
	거래상대방에 따라 내부가격설정기준과는 다르게 가격을 적용하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거래상대방에 따라 내부 기준과는 다르게 구매조건을 적용하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사규, 공문, 계약 등을 통해 계열회사와 우선적으로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유도하지는 않았습니까?			
	경쟁사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경쟁사와 거래하는 계열회사에게 해당 경쟁사와 거래중지 또는 거래량 축소 등의 요청을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거래처에 대해 계열사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구매중지 또는 구매량을 감소시킨다는 통지를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계열회사와 거래하면서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비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계속적으로 구입함으로써 계열회사의 경쟁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금 도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지는 않았습니까?			
	상품의 인도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A/S의 기간, 내용, 방법 등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지는 않았습니까?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별로 상품의 생산량, 출고량, 수송량을 할당하거나 용역조건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공동행위 참가업체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새로운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공동행위 참가자사업자별로 수주활동을 제한, 공동수주 하도록 하거나 입찰 또는 수주의 순위, 자격 등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타업체의 영업장소, 개수 등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거래상 지위남용 (공정거래 법 제45조)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품 구입을 요청하거나 일반적으로 상품을 송부하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제품을 현재 구입하지 않으면 향후의 제품 구입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 수령하도록 요청하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해당거래처의 수년간의 실적, 여타 업체와의 비교 등을 감안시 제시된 목표가 과다하고 이를 달성하게 하는 수단이 목표 미달시 구매중단/벌과금부과/계약해지 등의 제재적인 행위가 있었습니까?			
	상대방과 협의 없이 계약해지 할 수 있는 조항을 설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하지는 않았습니까?			
	계약서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하자보수를 강제하지는 않았습니까?			
	계약서 조항에서 자사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규정하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요 측면에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가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만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습니까?			
	발주자 귀책에 의한 검수지연, 물품 검사기간 등을 납품기간에 포함시켜 거래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습니까?			
	원가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경우 ‘갑’이 해당 계약금액을 무조건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지는 않았습니까?			
	계약서 조항에서 자사의 일반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규정하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상대방의 기술, 노하우 등을 무상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제공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까?			
	계약서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의 관계규정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지는 않았습니까?			
	계약서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하자보수를 강제하지는 않았습니까?			
	일정한 계약해지 사유 이외에 자사가 필요시 언제라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거래처에 대해 임직원 선임/해임/변경에 대해 자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구매중단/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경영지도라는 명칭 하에 거래처의 공급품목, 시설규모, 공급량, 거래내용에 대해 과도한 제한 및 의무를 과하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점검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경쟁사업자 배제 (공정거래법 제45조)	합리적 이유 없이 제품의 생산·판매에 필수적인 요소를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매점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 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원료를 평소보다 고가로 매입 하지는 않았습니까?			
	부당한 방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한적이 있습니까?			
구속조건부 거래 (공정거래법 제45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경쟁사 제품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는 않았습니까?			
	자기가 구입하는 상품을 경쟁사에게는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까?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까?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한적이 있습니까?			
사업활동 방해 (공정거래법 제 45조)	기술의 부당이용 등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지는 않았습니까?			
	사업영위에 필요한 특정시설을 타 사업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 45조)	공동행위 참가하는 업체에게 일정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이를 지키게 하거나, 가격의 인상, 인하율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지는 않았습니까?			
	상품의 인도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A/S의 기간, 내용, 방법 등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별로 상품의 생산량, 출고량, 수송량을 할당하거나 용역조건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공동행위 참가 업체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 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새로운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등을 제한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공동행위 참가사업자별로 수주활동을 제한, 공동수주 하도록 입찰 또는 수주의 순위, 자격 등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타업체의 영업장소, 개수 등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02. 하도급법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점검사항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계약 체결))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하도급법 제3조)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고 있습니까?			
	견적가격으로부터 인하가 가능한 경우, 합의내용은 기록 관리되고 있습니까?			
	거래 계약서 없이 발주(주문)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하도급법 제4조)	수량 없이 단가만 명시하여 수량을 미확정 상태로 두고 발주시 마다 수량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발주량 등 거래조건을 속이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발주수량 등 거래조건을 허위 또는 과대하게 제시하여 가격을 결정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경쟁 입찰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도급업체에 일률적으로 일정비율로 단가를 낮춰 발주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물품 구매 강제 금지 (하도급법 제5조)	목적물의 품질 유지, 개선, 등 정당한 사유 외에 물품을 지정하여 구입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았습니까?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를 원사업자가 구입을 강제하거나 지정하는 물품, 장비를 구입 또는 사용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까?			
	계약, 당시 언급이 없다가 제조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가 지정한 부품이라고 주장하며, 고가의 부품 구매를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까?			
	제조 위탁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지는 않았습니까?			

점검항목	점검사항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계약 이행))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선금금 지급 (하도급법 제6조)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대로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선금금의 지연지급 및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시 지연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까?			
내국신용개설 (하도급법 제 7조)	수출할 물품을 제조 위탁한 경우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고 있습니까?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하도급법 제8조)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는 않았습니까?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는 않았습니까?			
	발주자의 발주 취소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지는 않았습니까?			
	수급자가 위탁 받은 제조와 관련이 없는 다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탁을 취한적이 있습니까?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동의 합의를 강요하는 방법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형식적인 동의 합의를 받아 위탁을 취소한 사실이 있습니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 감액 등의 요구를 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한 적 있습니까?			
	검사기준을 정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상태에서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까?			
검사 및 결과 통지 (하도급법 제9조)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납기의 연기를 통보하지는 않았습니까?			
	검수기준은 명확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서면으로 교부되고 있습니까?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습니까?			
부당 반품 금지 (하도급법 제10조)	불합격품은 검수완료 후 지체 없이 반품하고 있습니까?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나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지는 않았습니까?			
	수급사업자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지는 않았습니까?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 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지는 않았습니까?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지는 않았습니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지는 않았습니까?			

점검항목	점검사항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대금 지급))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감액 금지 (하도급법 제11조)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적이 있습니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한 사실이 있습니까?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인하시키는 않았습니까?			
	단가인하 합의 후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도급대금 감액시 감액사유와 기준, 감액대상 물량, 감액금액, 감액방법 등 법정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공하였습니까?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았습니까?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았습니까?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지는 않았습니까?			
	계약 체결시 계약서 등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금액을 대금지급 시 부당하게 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물품 구매대금 부당 결제 청구금지 (하도급법 제12조)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법 제13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 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하도급대금 지급시 쌍방간 합의에 의해 적정하게 책정되었습니까?			
	하도급대금을 납품 후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이나, 어음 지급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까?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하도급법 제13조의2)	건설위탁 시 법정산식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있습니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있습니까?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할 것을 합의하지는 않았습니까?			
	보증의무 면제등급에서 제외된 후, 대금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 계약으로 추가된 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있습니까?			
	하도급대금이나 공사기간이 조정되어 그에 따른 지급보증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조정 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있습니까?			

03. 상생협력법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점검사항 (상생협력법(납품대금 연동제))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상생협력법 (납품대금 연동제)	상생협력법 중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습니까?			
	위탁 및 수탁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연동 조건을 상호 협의했습니까?			
	상생협력법 중 납품대금 연동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 체결시에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비용이 10% 이상입니까?			
	어떤 원재료를 대상으로 할지, 원재료의 가격 기준지표는 무엇으로 할지, 조정요건, 조정주기, 연동 산식으로 어떻게 할지 등을 정하여 약정서에 기재했습니까?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는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후에 각자 1부씩 보관했습니까?			
	조정요건이 충족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약정서에 기재된 연동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했습니까?			
	약정서에 기재된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했습니까?			
	납품대금 연동제 제외 대상에 대해 인식하고 있습니까?			
	2023년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사항에 대해 인식하고 있습니까?			